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8

1998. 10.
기획경제위원회

1.심사경과
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
1998년 10월 2일, 서울특별시장
나.회부일자
1998년 10월 2일
다.상정일자
제10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1998년10월20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2.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탁병오)
가.제안이유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)이 개정·시행('98.8.31)됨에 따라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정원 규정방식을 변경하고,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나.주요골자
(1)공무원 정원의 규정방식을 변경함.(안 제2조)
-현 행 : 본청, 의회사무처, 직속기관, 사업소
-개 정 : 집행기관의 정원, 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,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, 의회사무처의 정원
(2)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정원 3명을 확보함.(안 제2조제1호)
-국가직→지방직(보건복지국장, 감사관, 비상계획관, 예산담당관, 민방위과장)
-지방직→국가직(시정기획관,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)
※정원증가 3명 : 2·3급 2, 4급 1
다.참고사항
(1)관계법규
○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
-제21조(정원의 규정)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1.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.)
2.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의회사무기구의 정원
②(생략)
○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별표3(특별시·광역시 및 도의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)
-서울특별시의 경우 : 관리관 1,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, 서기관 1
(2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3.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
○현행 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본청 2,373명, 의회사무처 223명, 직속기관 5,650명, 사업소 8,430명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나(총계 1만 6,676명)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) 제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별표3(특별시·광역시 및 도의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)이 개정('98.8.31)되어 국가공무원 정원이 7명에서 4명으로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3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 1만 1,531명,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4,593명,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332명,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3명, 총계 1만 6,679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
○관계조문(제2조)의 체계에 있어 정원의 총수를 각호 최하단에 밑줄을 긋고 표기한 것은 구성상 어색함이 있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상기 규정(대통령령)과 같이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
"제2조(정원의 총수)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집행기관의 정원 : 11,531명
2.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4,593명
3.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332명
4.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23명

총 계 : 16,679명"를

"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16,679명으로 총수를 정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.) : 11,531명
2.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4,593명
3.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332명
4.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23명"

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

○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생각되고

○부칙 제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별표3(특별시·광역시 및 도의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)의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정원이 7명에서 4명으로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3명에 대하여 제2조제1호에 증원하여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

○부칙 제3조(한시정원)에서 집행기관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동 개정조례안 제2조(정원의 총수)를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4.질의·답변 : 생략

5.수정안의 요지

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0월 20일, 정현균의원 외 1인

나.수정이유

○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(대통령령)이 '98.8.31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의거 정원의 총수를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이나 관계 조문(제2조)의 체계에 있어 정원의 총수를 각 호 최하단에 밑줄을 긋고 표기하여 구성상의 어색함이 있고

○집행기관의 정원을 상기규정(대통령령)과 같이 명확히 하기 위함.

다.수정 주요골자

○정원의 총수는 본문에서 정하고 각 호 최하단에 밑줄을 긋고 표기한 총계는 삭제함.(안 제2조)

○집행기관의 정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"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"를 ( )로 내서함.(안 제2조)

6.심사결과

○수정안 의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9명 전원일치)

7.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.....

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9

1998. 10.
기획경제위원회

1.심사경과

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

1998년 10월 2일, 서울특별시장

나.회부일자

1998년 10월 2일

다.상정일자

제10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1998년 10월 20일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탁병오)

가.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의 규제시책을 심의·조정하고 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주요골자

1)기능(안 제2조)

가)기존 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